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6월 30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8년 7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45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08년 7월 14일) 상정
- 제145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08년 7월 14일) 수정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김영의)

□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0464호, 2007. 12. 28. 공포·시행)되고 정부의 위원회종합정비 계획에 따라 부천시교육경비심의위원회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나.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하여야 하며,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등으로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교육경비의 신청 및 교부결정, 목적 외 사용금지, 변경,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다. 보조사업 종료 시의 보고사항 및 소속공무원의 서류 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라. 교육경비의 지원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11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 제목과 본문 내용이 부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교육경비 정책과 집행방향을 정함에 있어 학부모와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창구를 없애는 것 아닌가? ◦ 실무협의회는 누가 참여하는가? ○ 학부모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교육경비 정책방향, 우선순위 결정 등에 있어 의견수렴은 꼭 필요하다. 협의체를 운영하여 자문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 현행 규칙이 조례에서 위임하지 않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규칙도 정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이 필요함. ◦ 교육경비 심의시 학교→교육청→시청의 단계를 거치게 되므로 학부모의 의견이 신청단계에서 반영되며, 앞으로 실무협의회에서 대체할 계획임. ◦ 시청과 교육청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됨. ○ 검토하겠음. ○ 조례위임의 범위내에서 정비하겠음.

4. 토론요지

가. 반대토론

- 교육경비 정책방향과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학부모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은 반드시 필요하며, 위원회를 폐지하더라도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해야 하므로 본 조례안을 부결한 후 보완·재상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찬성토론

- 정부의 위원회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를 통합하는 사안이므로 조의 제목과 본문 내용이 부합하지 않는 제2조만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함.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제264호
의결 년월일	2008. 7. 18 (제145회)

제안년월일 : 2008. 7. 14.

제안자 : 행정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제2조의 조제목 “교육경비 보조의 제한”과 본문 “시장은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수정함.

2. 주요골자

- 제2조의 조제목과 본문을“제2조(교육경비 보조) 시장은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로 수정함(안 제2조)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의 조제목중 “교육경비 보조의 제한”을 “교육경비 보조”로, 본문중 “시장은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개정조례안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 조 례 안	수 정 안
<p>제2조(교육경비 보조의 제한) 시장은 교육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u>보조하여</u> 야 한다.</p>	<p>제2조(교육경비 보조)</p> <p>-----</p> <p>----- 보조할</p> <p><u>수</u> 있다.</p>

[수정안 포함]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교육경비”라 한다)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경비 보조) 시장은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시장이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교육경비의 신청) 교육경비를 보조받고자 하는 학교장 및 부천교육장(이하 “학교장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학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2. 보조사업의 종류, 목적 및 사업내용
3. 보조사업의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총 사업비의 산출내역, 사용방법 및 사업효과
5. 보조사업의 세부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경비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에 보조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② 시장은 교육경비의 보조를 결정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보조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경비의 교부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교육경비를 보조받은 학교장등은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교육경비를 보조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7조(보조결정의 변경 등) 시장은 교육경비의 보조를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보조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8조(교육경비의 집행) ① 교육경비를 보조받은 학교장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경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1.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2.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받은 교육경비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집행하되, 수입과 지출이 투명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및 검사) ① 교육경비를 보조받은 학교장등은 사업이 종료되면

보조사업 시행실적과 교육경비 집행내역을 시장 및 부천교육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경비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교육경비를 보조받은 학교 및 교육청에 출장하여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학교시설의 이용) 교육경비의 지원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교육경비보조를 신청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현행 조례)

부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제정 2003. 11. 06 조례 제198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하여 부천시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은 부천시 국장급 공무원 3인, 관할교육장이 추천하는 국장급 이상 교육공무원 2인, 교육전문가 5인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사업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본예산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보조금의 신청) ①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비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3조(일비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일비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11.06 조례 제198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